

가 정 통 신 문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아직도 무더위가 가시지 않았지만, 아침 저녁으로 부는 시원한 바람으로 가을을 느끼곤 합니다. 저희 3학년 담임 선생님들은 꾸준한 상담을 통하여 수시 원서 접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사오니 학부모님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정원의 특별전형 대상 범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읽어보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안내 배경

- '15.7월부터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법)이 시행되어, 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 범위*가 확대되고,
- ② 급여지급 방식이 일괄지급방식에서 개별지급방식으로 변경
- * (종전) 최저생계비 100% 이하 [중위소득 40% 이하와 유사] →
(개정) 중위소득 50% 이하(기초수급자를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



- 다만, 기초법 부칙 제6조에 경과 규정을 두고 있어, 기초·차상위 정원의 특별전형의 근거인 「고등교육법 시행령」도 기초법 부칙을 적용하여야 함

적용 기간	타 법령이 종전 기초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 적용 기준
'15.7.1.~'15.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 기초법 적용 ○ 수급권자 범위 : 의료급여 수급권자 까지
'16.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기초법 적용 ○ 수급권자 범위 : 교육급여 수급권자 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부칙
 제6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제2조제2호의 수급자, 제2조제6호의 최저생계비, 제2조제11호의 차상위계층, 제5조의 수급권자에 대한 규정을 인용한 법령 등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로 본다.**

※ 기초·차상위 정원의 특별전형 근거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라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안내 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원의 특별전형 대상 범위**

- 현행 법령 상 '15년에 실시되는 4년제 대학 수시 및 정시 모집에서 기초·차상위 정원의 특별전형 대상 범위는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학생임
- 각 대학은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차상위 정원의 특별전형을 운영하여야 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원의 특별전형 대상 범위

① 기초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중 하나인 자

※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라도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 대상

② 차상위계층

※ 기초·차상위 정원내 특별전형은 대학 자율로 선발하는 사항이므로, 정원내 기초수급권자의 범위는 **해당 대학에 문의**

- 수급자 여부는 수급자 증명서로 확인 가능

수급자 증명서 양식(부분 발췌)

4. 수급자 구분: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 위 V 표시가 있는 네가지 항목 중 한 가지 이상 항목에 V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 수급자에 해당

※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란에 V 표시가 있더라도 나머지 네가지 항목 중에 어느 하나에도 V 표시가 없다면 특별전형 대상자에서 제외

- 각 교육청과 학교는 위 사항을 홈페이지, 상담,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생, 학부모에게 신속히 전파 요망
- 각 대학이 당초 발표한 '특정일(원서접수 마감일 등) 기준으로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변동이 없더라도,
 - 학생이 대학에 제출해야 하는 기초·차상위 증명서류의 발급일자, 대학의 기초·차상위 증명서류 접수 마감일자는 최대 **9.25.(금)까지 연장될 수 있으므로**, 세부 사항은 해당 대학에 확인 요망
 - ※ 대학별로 마감일자가 상이할 수 있음

호 남 제 일 고 등 학 교